

휴일·야간에 발생한 위기지원대상 시설보호를 위한 2020 SOS 위기지원 통합시스템 운영 매뉴얼







휴일·야간에 발생한 위기지원대상 시설보호를 위한

2020 SOS 위기지원 통합시스템 운영 매뉴얼

추진배경 및 사업개요

법적근거 및 추진배경	04
지원원칙 및 사업개요	05
야간ㆍ휴일 운영체계	06
운영체계도	07

SOS 위기지원 통합시스템 운영(사업별)

노숙인	08
장애인	09
노인	10
여성	11
아동	12
청소년	13
정신질환자(자살위기)	14

SOS 위기개입 기관 및 연락처

위기개입 기관 및 쉼터	15
행정기관	16~17
경찰서 및 소방서	18

1. 법적근거

- 아동복지법 제15조(보호조치)
-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(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 제1항 제2호
-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(국가의 책무)
-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운영)
-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
-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(국가 등의 책임)
-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(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시도, 시장, 군수, 구청장에 의한 입원) 제50조(응급입원)
-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(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),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(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)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-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(보호조치등)

2. 추진배경

- 위기지원 대응 매뉴얼 부재로 관련기관 간의 업무 혼선
- 근무시간외 전담인력 부재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
- 지역내 위기지원 네트워크 미구축에 따른 위기지원 누수 발생
- 365일 위기지원시스템 가동 미흡에 따른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
- 일부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의 야간, 휴일 위기대처 미흡
- 제4기 성남시지역사회복지계획(전달체계부문, 핵심사업)



3.지원원칙

- 365일 24시간 위기대상자 발생 시 ONE-STOP 지원
- **0ɨ간** · **휴일** 시설보호 위기지원 대상 지역내 보호 (근무시간 발생자는 각 사업부서, 기존 위기개입 지원 매뉴얼로 진행)
- 각 사업부서 위기대응 시스템 운영

4.사업개요

- 분 야: 아동, 노인, 여성(이주여성), 청소년, 장애인, 정신질환자, 노숙인 등
- 대 상 : 유기, 학대, 폭력 등 위기상황으로 시설보호가 필요한 대상 ※ 근무시간 외 발생(야간, 휴일)하는 시설보호 대상

• 사업내용

- 야간 · 휴일 등 근무시간외 발생한 위기지원 대상 시설보호 ONE-STOP 지원
- -위기개입 전문기관 기능 강화 및 민 관 네트워크 구축
- 사업부서 및 위기개입 전문기관

구분	위기개입 전문기관	쉼터	보호체계	사업부서	비고
노숙인	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	2	24시간	복지정책과	
장애인	-	2	24시간	장애인복지과	
노 인	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	1	24시간	노인복지과	
여 성	굿패밀리상담센터	1	24시간	여성가족과	
아 동	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	1	24시간	아동보육과	
청소년	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	3	24시간	교육청소년과	
정신질환자	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	-	24시간	보건소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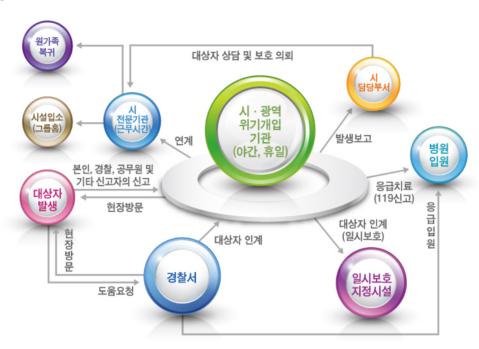
5.약간·휴일 운영체계

대상 (부서)	운영방법 (야간·휴일)	위기개입기관 및 보호기관	운영기간	비고
노숙인 (복지정책과)	신고 → 노숙인종합지원센터(상담・보호・연계) → 시설보호 등(병원입원, 유관기관 연계)	노숙인종합지원센터 보호기관 : 안나의 집, 내일을 여는집	24시간	751-1970
장애인 (장애인복지과)	신고 → 경찰서(신분확인, 보호연계 의뢰) → 시설보호(지정기관) → 사후 담당자 확인	장애인복지과, 경찰서 보호기관 : 예가원, 소망재활원	야간 • 휴일	장애인본지과 : 729-2881-3 예가원 : 705-2366 소망자활원 : 741-3001
노인 (노인복지과)	신고 → 전문기관(상담・보호결정) → 일시보호기관 입소 보호 → 부서 담당 확인 및 지원	• 경기동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• 보호기관 : 베스트요양원	24시간	755-9909
여성 (여성가족과)	1차 긴급상담(광역센터) → 성남보호센터 (굿패밀리상담센터) → 긴급보호시설 (야간, 휴일) → 관련시설 연계(가정폭력,성폭력,성매매 피해여성 쉼터)	• 굿패밀리상담센터 • 보호기관 : 비공개 시설	야간·휴일	733-0675
아동 (아동보육과)	발생신고 → 경찰서 → 전문기관 위기개입 (상담・보호결정) → 쉼터연계・보호	• 경기성남아동보호 전문기관 • 보호기관 : 비공개 시설	24시간	112 756-1391
청소년 (교육청소년과)	1차 긴급상담(광역센터) → 성남센터 → 실무자(1388지원단, CYS-NET)구조 → 쉼터 보호	광역상담센터(수원)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호기관: 3개소	24시간	1388
	발생신고→ 1차 긴급상담 (광역센터, 1577-0199) → 병원수송 (경찰관 동의 • 동행, 소방관 협조) →	•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(수원)	24시간	1577-0199
정신질환자 (분당구보건소)	의사 입원 결정 후 보호 (72시간) →	• 보호기관 : 정신병원	(야간·휴일)	129
	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후 조치 ※ 장애인시설 보호불가	•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	주간	754-3220



6.운영 체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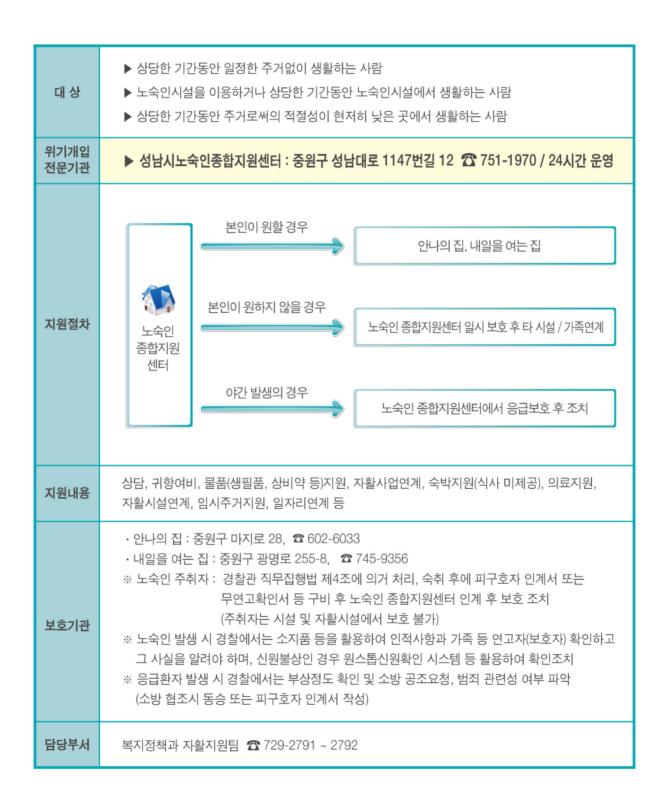
▶ 야간 · 휴일



▶ 주간(근무시간)



위기지원 노숙인 발생 시 위기개입 보호 체계





위기지원 장애인 발생 시 위기개입 보호 체계

대 상	▶ 학대·방임·유기·배회 장애인
위기개입 전문기관	▶ 동, 구, 시 장애인복지 담당 ▶ 시설입소 진행 : 시(장애인복지과)
지원절차	위기지원 장애인 발생 발견신고(주민, 경찰) 상 경찰서 지구대 사 보호의뢰 일시보호시설 상담 보호
지원내용	안전조치, 일시보호
보호기관	일시보호 시설 • 예가원 ☎ 705-2366 • 소망재활원 ☎ 741-3001
담당부서	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☎ 729-2881~2883



위기지원 <mark>노인</mark> 발생 시 위기개입 보호 체계

대 상	▶ 학대·방임·유기	
위기개입 전문기관	▶ 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🏗 1577-1389, 736-1389 / 24시간 운영	
지원절차	● 내병, 방문, 서신, 온라인 상담 ● 1577-1389 : 24시간 운영 ● 폭력, 착취, 가혹행위, 유기, 방임 노인 발생 ● 안전확보 시 종결 ● 종결 후 3개월간 시후관리 ● 안전확보 시 종결 ● 종결 후 3개월간 시후관리 ● 안전확보 시 종결 ● 3개월간 시후관리 ● 안전확보 시 종결 ● 3개월간 시후관리 ● 안전확보 시 종결 ● 3개월간 시후관리 ● 일로서비스 ● 지속 모니터링 ● 일시보호 시설 지정 : 노인복지과	
지원내용	안전조치, 일시보호, 의료지원, 법률자문 등	
보호기관	일시보호시설 : 베스트요양원 🕿 755-9909	
담당부서	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🏗 729-2871 ~ 2874	



위기지원 역성 발생 시 위기개입 보호 체계

대 상	▶ 가정폭력, 성폭력으로 위기지원이 필요한 여성 ▶ 성매매피해 위기지원
위기개입 전문기관	▶ 굿패밀리상담센터 ☎ 1366, 733-0675
지원절차	아성폭력 피해 여성 1차 긴급상담 굿페밀리상담센터 1366, 733-0675(24시간 운영) 일시 긴급보호시설 운영 서비스연계 • 의료기관 • 상담기관 • 법률구조기관 • 보호시설
지원내용	상담 및 정서적 지원, 일시보호(쉼터), 의료지원, 법률자문
보호기관	비공개 시설 ※ 긴급보호시설 운영
담당부서	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🕿 729-2921 ~ 2927



위기지원 아동 발생 시 위기개입 보호 체계

대 상	▶ 18세 미만 아동으로 학대·방임·유기·미아
위기개입 전문기관	▶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🏗 756-1391 / 24시간 운영
지원절차	● 112 또는 119 ●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● 응급이동학대의심사례 ● 이동학대의심사례 ● 일반상담 ● 272시간 이내 ● 경찰우선 동행・출동 ● 272시간 이내 ● 경찰우선 동행・출동 ● 개별상담 ● 내려검사・치료 (아동, 행위지) ● 의료서비스 ● 긴급, 일시보호 ● 지속 모니터링
지원내용	개별상담, 심리검사・치료, 의료서비스, 긴급・일시 보호, 사례관리
보호기관	비공개 시설 ※ 학대아동전용쉼터 1개소 운영
담당부서	아동보육과 아동복지팀 🏗 729-2941 ~ 2945



위기지원 청소년 발생 시 위기개입 보호 체계

대 상	▶ 가출 및 배회 청소년(만13~19세)	
위기개입 전문기관	▶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🏗 1388, 756-1388	
지원절차	위기청소년 발굴 및 조기발견 사례접수 (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) 기급개입 위기상담 위기상담 위기사례 평가 기급 지원 서비스 · 상담 및 정서적 지원 · 인시 보호 서비스 · 진로지원 및 정보제공 · 가정복귀 지원 · 이라 및 문화활동 지원 · 의료 및 건강지원/법률자문	
지원내용	상담 및 정서적 지원, 일시보호, 가정복귀 지원, 지역사회 연계지원(쉼터, 지원센터), 의료지원, 법률자문	
보호기관	・성남시일시청소년쉼터 : 7일 이내 일시보호 ☎ 758-1388 ・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(여자) : 24시간(3개월 미만 단기) ☎ 758-1213 ・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(남자) : 24시간(3개월 미만 단기) ☎ 722-6260	
담당부서	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🏗 729-3031 ~ 3034	



위기지원 정신질환자 발생 시 위기개입 보호 체계

대 상	▶ 정신질환 및 자살 시도자	
위기개입 전문기관	▶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(☎ 1577-0199, 129, 754-3220)	
지원절차	*** 정신건강위기상담	
지원내용	상담, 응급출동, 기관연계(정신건강의학과 의원, 지역사회기관 등)	
보호기관	입원대상: 병의원 입원 조치 ※ 응급입원: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에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음.(경찰관 동의, 의사 입원결정 / 72시간 범위 내) ※ 장애인시설 이용불가	
담당부서	분당구 보건소 정신건강팀 🏗 729-4332	



사업별 위기지원 개입 전문기관 및 쉼터

구분		시설명	주소	대표번호	성남시 기 관	사업부서	비고
위기 개입 전문 기관	노숙인	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	중원구 성남대로 1147번길 12		751-1970	복지정책과	
	노 인	경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	중원구 둔촌대로 183 번길 20(실내체육관3층)	1577-1389	736-1389	노인복지과	
	여 성	굿패밀리상담센터	중원구 희망로 356	1366	733-0675	여성가족과	
	아 동	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	수정구 성남대로 1306	112 756-1391	756-1391	아동보육과	
	청소년	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	중원구 성남대로 997, 25-9	1388	756-1388	교육청소년과	
	정신질환	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	수정구 수정로 218	1577-0199	754-3220	분당구보건소	
	노숙인	안나의 집	중원구 마지로 28		602-6033		
		내일을 여는집	중원구 광명로 255-8		745-9356		
	장애인	예가원	분당구 새나리로38번길 13		705-2366		
		소망재활원	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12		741-3001		
쉼터	노 인	베스트요양원	중원구 도촌남로 33		755-9909		
	여 성	비공개시설					
	아 동	비공개시설					
	청소년	성남시일시청소년쉼터	수정구 탄리로 80, 2층		758-1388		
		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(여자)	중원구 마지로 29, 201호 (참조은아파트)		758-1213		
		성남시단기청소년쉼터(남자)	수정구 위례서일로 12, 8층 (창곡동, 우남이타워프라자)		722-6260		



행정기관 (시·구·동, 보건소)

구분	부서	담당업무 팀	대상구분	전 화	비고
	복지정책과	자활지원팀	노숙인	729-2791 ~ 2792	
	장애인복지과	장애인복지팀	장애인	729-2881 ~ 2883	
	노인복지과	노인복지팀	노 인	729-2871 ~ 2874	
시·구	여성가족과	여성정책팀	여 성	729-2921 ~ 2927	
	아동보육과	아동복지팀	아 동	729-2941 ~ 2945	
시 · 수 보건소	교육청소년과	청소년팀	청소년	729-3031 ~ 3034	
	수정구 사회복지과	사회복지팀	위기대상	729-5210 ~ 5217	
	중원구 사회복지과	사회복지팀	위기대상	729-6210 ~ 6217	
	분당구 사회복지과	사회복지팀	위기대상	729-7210 ~ 7215	
	수정구보건소	지역보건팀	정신질환자	729-3842	
	중원구보건소	지역보건팀	정신질환자	729-3902	
	분당구보건소	정신건강팀	정신질환자	729-4332	
	신흥1동	사회복지담당		729-5612	
	신흥2동	사회복지담당		729-5632	
	신흥3동	사회복지담당		729-5653	
	태평1동	사회복지담당		729-5671	
	태평2동	사회복지담당		729-5972	
	태평3동	사회복지담당		729-5997	
	태평4동	사회복지담당		729-5379	
	수진1동	사회복지담당		729-5139	
수정구 행정복지센터	수진2동	사회복지담당		729-5943	
804.15-1	단대동	사회복지담당		729-5397	
	산성동	사회복지담당		729-5813	
	양지동	사회복지담당		729-5833	
	복정동	사회복지담당		729-5845	
	위례동	사회복지담당		729-5963, 5477	
	신촌동	사회복지담당		729-5866	
	고등동	사회복지담당		729-5892	
	시흥동	사회복지담당		729-5903	



행정기관 (시·구·동, 보건소)

구분	부서	담당업무 팀	전 화	비고
	성남동	사회복지담당	729-6612	
중원구 해정본지세터	중앙동	사회복지담당	729-6896	
	금광1동	사회복지담당	729-6647	
	금광2동	사회복지담당	729-6861	
	은행1동	사회복지담당	729-6694	
행정복지센터	은행2동	사회복지담당	729-6713	
	상대원1동	사회복지담당	729-6912	
	상대원2동	사회복지담당	729-6753	
	상대원3동	사회복지담당	729-6881	
	하대원동	사회복지담당	729-6886	
	도촌동	사회복지담당	729-6815	
	분당동	사회복지담당	729-7613	
	수내1동	사회복지담당	729-8113	
	수내2동	사회복지담당	729-7647	
	수내3동	사회복지담당	729-7664	
	정자동	사회복지담당	729-8142	
	정자1동	사회복지담당	729-8253	
	정자2동	사회복지담당	729-7711	
	정자3동	사회복지담당	729-7726	
	서현1동	사회복지담당	729-8175	
분당구	서현2동	사회복지담당	729-8183	
행정복지센터	이매1동	사회복지담당	729-8195	
	이매2동	사회복지담당	729-7805	
	야탑1동	사회복지담당	729-8213	
	야탑2동	사회복지담당	729-7852	
	야탑3동	사회복지담당	729-7872	
	금곡동	사회복지담당	729-8283	
	구미동	사회복지담당	729-8294	
	구미1동	사회복지담당	729-8412	
	판교동	사회복지담당	729-8422	
	삼평동	사회복지담당	729-8432	
	백현동	사회복지담당	729-8312	
	운중동	사회복지담당	729-8443	



경찰서 및 소방서

구	분	기관명	주소	전 화	팩 스
		수정경찰서, 여성청소년과	수정구 성남대로 1259	720-4218	750-4000
		고등파출소(신촌동, 오야동 등 9개동)	수정구 고등공원로 47	750-4050	
		복정파출소(복정동)	수정구 복정로 36	750-4060	
		성남위례파출소(위례동,창곡동 일부)	수정구 위례동로 135-2	750-4070	
		산성파출소(산성동)	수정구 수정남로 317	750-4014	
		수진1파출소(수진1동)	수정구 탄리로 21	750-4024	
		수진지구대(태평1동, 수진2동)	수정구 모란로 1	750-4020	
		신흥지구대(신흥1~3동)	수정구 시민로 150	750-4030	
		단대파출소(단대동, 양지동)	수정구 단대로 15	750-4010	
		중앙파출소(태평2~3동)	수정구 수정로 145	750-4040	
		태평4파출소(태평4동)	수정구 남문로 128	750-4034	
		중원경찰서, 여성청소년과	중원구 금빛2번길 10	8036-5348	
	경	금광지구대(금광1~2동)	중원구 금빛로 33	743-3323	
공 공	찰	대원파출소(상대원1,3동)	중원구 둔촌대로 439	743-3325	
기	서	상대원2파출소(상대원2동, 중앙동)	중원구 음촌로 373	743-3326	
관		성호지구대(성남동)	중원구 산성대로 190-6	752-3327	
		은행파출소(은행1~2동)	중원구 은행25번길 14	743-3320	
		도촌파출소(도촌동, 하대원동, 여수동, 갈현동)	중원구 도촌북로 43	723-6663	786-5000
		분당경찰서, 여성청소년과	분당구 정자일로 165	786-5149	
		구미파출소(구미동)	분당구 구미로 107	712-3329	
		금곡지구대(금곡동, 정자동, 정자1~3동, 구미1동)	분당구 성남대로길 171번길 12	714-0112	
		서현지구대(서현1~2동, 분당동)	분당구 중앙공원로 31번길 30	701-0112	
		수내파출소(수내1~3동)	분당구 불정로 253	711-0292	
		야탑지구대(야탑1~3동, 이매1~2동)	분당구 야탑로 76	706-3112	
		동판교파출소(삼평동, 백현동)	분당구 동판교로 266번길 24	707-0112	
		서판교파출소(판교동, 운중동, 궁내동, 하산운동, 대장동, 석운동)	분당구 운중로 146번길 6	8016-3112	
	소방서	분당소방서 (현장대응단)	분당구 양현로 14	주)8018-3436 야)8018-3502	8018-3419
		성남소방서 (상황실)	수정구 제일로 111	720-0435	720-0437



2020년 긴급지원사업

지원대상 : 위기상황, 소득 및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
- 가, 주 소득자가 시망, 기출, 행불,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나.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다. 기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, 유기, 학대, 가정폭력,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라. 화재,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마, 실직, 사업실패(휴 폐업)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바.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소득활동 미미(가구원 간호 · 간병 · 양육), 기초수급 중지 · 미결정, 수도 · 가스 중단, 건강보험료 · 주택임차료 체납 등
- 사.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
 -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·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
 -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,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지살 고위험군 으로서 관련 부서(기관)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
 - ⑥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- ⑦ 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

5월 소득 및 재산 기준

·소 특 : 중위소득 75% 이하(4인 356만원 이하)

· 금융재산 : 500만원 이하(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)

·재 산: 11,800만원 이하 (전국 중소도시 기준)

지원내용

종류	지원내용	지원금액	최대횟수
생계비	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	약 123만원 (4인기준)	6회
의료비	입원 수술 및 치료 등 의료비지원 항암치료비 간병비(중한질병으로 입원 시 유료간병비)	300만원 이내	2회
주거비	임시거소 제공(제공자에게 사는 곳 사용비용 지원) 임대보증금(경매,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자)	약 29만원 (중소도시, 4인기준)	12회
복지시설이용료	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(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)	약 145만원(4인기준)	6호
교육비	초 · 중 · 고등학생 수업료 등 지원 초등 약 22만원 (해당 학교장 고지금액/ 입학금은 해당 학생만 지원) 고등 약 43만원 및 수업료,		2회(4회)
그밖의지원	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 자에게 지급 · 연료비 or 월동난방비〈동절기(10월~3월)〉 · 해산비 · 장례 보조비 · 전기요금	98,000원/월 70만원 80만원 50만원 이내	1회 (연료비 6회)

- **통합사례관리사업**: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복지 · 보건 · 고용 · 주거 · 교육 ·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 · 모니터링 하는 사업
- ☑ 지원요청: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/ 국번 없이 129
- 🔯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제도개선 (2020년 7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함)

구분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

긴급복지 (기준) 11,800만원 (한시) 16,000만원 (기준) 500만원이하 (*단,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이하) (한시) 4인 기준 974만원까지 인정

